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16회 제2차 정례회(2017.1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 
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  
전문위원 김용범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7년 11월 23일(木), 백남환 의원 외 12인

## 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7년 11월 24일(金)

## 4. 관련법령

-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3조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

## 5. 제안이유

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함.

## 6. 주요내용

- 가.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(안 제4조)
- 나. 생활소음·진동의 측정(안 제5조)
- 다.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(안 제6조)
- 라. 지도단속(안 제7조)

## 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백남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  
  
본 안건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·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·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  
- 본 조례안은 소음·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